

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70호

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확 정 일 : 2022년 7월 22일

시 행 일 : 2022년 8월 4일

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,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 직위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
2. 임원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
3.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부대되는 업무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(노동이사는 제외한다)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(이하 “선임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,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②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일부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상임이사 간 협의에 따른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는 동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

[정 2022.7.22.>](#)

③ 선임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, 2분의 1 미만으로 하되, 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선임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 위원은 성별·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이사회는 제3항의 선임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전문기관, 관련 학계 및 단체,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) ① 제4조제3항 후단의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의 직급별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추천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위원 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이사회에 추천한다.

④ 제1항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간사는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하는 인사관리담당부서장이 된다.

⑤ 제4항의 간사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수립
2.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·관리
3. 그 밖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구성시기 등) ①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고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직위의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,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.

제7조(회의운영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·주재한다. 다만,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,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

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서면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2.7.22.>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<신설 2022.7.22.>

2. 긴급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<신설 2022.7.22.>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<신설 2022.7.22.>

⑤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 동시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2.7.22.>

⑥ 제5항에 따라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신설 2022.7.22.>

제8조(후보자 모집방법) ① 위원회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, 공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 중에서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,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추천방식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22.>

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인재채용·인재추천·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

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) ①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 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, 인사혁신처,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(삭제)

④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공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응모자·추천된 자의 자격은 유효하다.

제10조(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) ① 추천방식에 의하여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전문기관, 관련 학계 및 단체,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,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3년 이상

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받아야 한다. <신설 2022.7.22.>

1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임원후보자 2명 <신설 2022.7.22.>

2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사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고,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재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임원후보자 2명 <신설 2022.7.22.>

③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7.22.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2.7.22.>

제11조(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)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제출서류)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22.>

1. 이력서

2. 자기소개서

3. 직무수행계획서

4.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
제13조(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2.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
② 응모자·추천된 자는 특정한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응모자·추천된 자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·기피·회피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·기피·회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원장은 다른 위원의 임명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심사절차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직위의 경우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,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 다만,

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
④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응모자·추천된 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.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,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되 투표결과도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, 면접심사는 응모자·추천된 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하되, 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⑥ 면접심사는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22.7.22.>

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 경우, 면접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7.22.>

⑧ 임원 직위별 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으며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22.>

제15조(경영계약안 협의)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고, 협의된 경영계약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제16조(임원후보 추천) ① 위원회는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임원후보자

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, 추천배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 다만, 직위 특성,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·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야 한다.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, 별지 제10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, 별지 제11호서식의 후보자 선발경과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.

③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사의 비상임이사 재직자와 성별, 지역 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공모를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⑥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 다만,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2.7.22.>

제17조 (삭제)

제18조(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) ① 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을 임원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경우

2. 업무의 이관·위탁,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2.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

3. 공사와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및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
제1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하는 이사회운영담당부서장이 된다.

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
2. 위원회의 소집관련 업무 및 후보자 심사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0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. 다만, 회의록을 공개함에 있어 경영상 기밀이나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출석수당 등) ① 공사는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출석수당,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2조(비밀유지의무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모집·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, 사생활 정보,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09.10.1.>

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11.26.>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0.23.>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0.31.>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0.25.>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7.22.>

이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제14조 관련)

사장 직위 심사 기준

구분	직 무 수 행 요 건
기본 역량	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○ 대규모 공·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및 능력 ○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·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능력 ○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☐ 경영비전제시 및 실천역량 ○ 대·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역량 ○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○ 경영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 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○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,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○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○ 건전한 도덕성, 청렴성,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
고유 역량	☐ 토지·도시·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○ 토지·도시·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○ 토지·도시·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전문적인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○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○ 국민·국회·언론·시민단체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민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 능력

[별표 2] (제14조 관련)

상임감사위원 직위 심사 기준

구분	직 무 수 행 요 건
기본 역량	☐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○ 공직자로서의 국가관, 청렴성, 도덕성, 준법성과 실천능력 ○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○ 경영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 ○ 조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역량
고유 역량	☐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○ 감사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○ 청렴도 개선, 감사기능 활성화 및 공사 발전유도 전략 ☐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○ 토지·도시·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양 ○ 공사업무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역량 ☐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○ 경영상 개선점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역량 ○ 장기적 경영여건 분석과 대비 역량

[별표 3] (삭제)

[별표 4] (제14조 관련)

비상임이사 직위 심사 기준

구분	직 무 수 행 요 건
기본 역량	☐ 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○ 기업경영·회계·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○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 ○ 대규모 조직의 인적·물적 자원 운영 경험 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○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·자질 ○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☐ 공직자로서의 자질 ○ 준법성,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○ 투명경영에 대한 마인드
고유 역량	☐ 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○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해박한 지식 ○ 토지·도시·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 ○ 경영 및 감사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○ 중·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 및 방향제시 능력 ☐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 제시능력 ○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○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·능동적 대응 능력

[별지 제1호서식] (제10조 관련)

추 천 서

☐ 추천직위 :

성 명	(한문:)	생년월일	년 월 일	
연락처	주 소			
	직장/직위			
	연락처	직장전화:	자택전화:	
		휴대폰:	E-mail:	
학 력	기 간	학교명	학과/전공	학 위
주 요 경 력				
추 천 사 유				
추 천 인 인적사항	성 명	(인)		
	직장/직위			
	연락처			

[별지 제2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사장 직위 서류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점	평가점수				
		A	B	C	D	E
		20	18	16	14	12
대규모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	20					
경영 비전제시 및 실천역량	20					
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	20					
토지·도시·주택분야 등 공사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	20					
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	20					
합 계	100점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3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상임감사위원 직위 서류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
		A	B	C	D	E
		20	18	16	14	12
공직자로서 공직 윤리의식과 책임감	20					
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	20					
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	20					
공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	20					
경영여건 분석과 대안제시 역량	20					
합 계	100점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4호서식] (삭제)

[별지 제5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비상임이사 직위 서류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
		A	B	C	D	E
		20	18	16	14	12
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	20					
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	20					
공직자로서의 자질	20					
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	20					
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 제시능력	20					
합 계	100점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6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사장 직위 면접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점	평가점수						
		A	B	C	D	E	F	G
		20	19	18	17	16	15	14
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	20							
경영비전제시 및 실천역량	20							
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	20							
토지·도시·주택 분야 등 공사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	20							
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	20							
합 계	100점		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7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상임감사위원 직위 면접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		
		A	B	C	D	E	F	G
		20	19	18	17	16	15	14
공직자로서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	20							
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	20							
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	20							
공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	20							
경영여건 분석과 대안제시 역량	20							
합 계	100점		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8호서식] (삭제)

[별지 제9호서식] (제14조 관련)

비상임이사 직위 면접심사 평가표

응모자 :

심사위원 :

(서명)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		
		A	B	C	D	E	F	G
		20	19	18	17	16	15	14
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	20							
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	20							
공직자로서의 자질	20							
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	20							
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	20							
합 계	100점		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 √ 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[별지 제10호서식] (제16조 관련)

후보자 추천서

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(○○○○) 직위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함

연번	성명	생년월일	비고
1	○○○	0000,00,00	
2			
3			

*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

20〇〇년 〇월 〇일

[illegible]

[별첨 1] 추천후보자 인적사항

성 명	출 생	학 력	주 요 경 력	이해관계 유무
○○○	○○ 00.00.00	·○○고(00) ·○○대 ○○학(00) ·○○대 ○○학 석사(00) ·○○대 ○○학 박사(00)	※최근 경력부터 4~5개 기재 ·○○○ ○○○(00~현재) ·○○○ ○○○(00~00) ·○○○ ○○○(00~00) ·○○○ ○○○(00~00) ·○○○ ○○○(00~00)	무
○○○	○○ 00.00.00			무
○○○ (女)	○○ 00.00.00			무

< 별첨 2 > 세부 추천사유

성 명	현 직	추천 사유
○ ○ ○	○ ○ 대 00학과 교수	
○ ○ ○ (女)		
		- - - -

후보자 선발경과

1. 선발 개요

☐ 선발 직위

- 비상임이사 0명(○○○, ○○○) 임기만료('00.00.00)에 따른 후임자 선발

☐ 선발방법

- 근 거 :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
- 방 법 : 공개모집 및 추천
- 모집의 세부내용

구 분	기 간	인 원	접수 기간	비고
공모·추천방 식 병행		0명 (여성: 0명)		

다.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: '00.00.00(○)~00.00(○)

-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: '00.00.00(○)
 - ※ 1차 : '00.00.00(○), 2차 : '00.00.00(○), 3차 : '00.00.00(○)
- 응모자 0명중 0명을 ○○○○후보자로 추천

2. 모집 개요

☐ 공개모집 공고

- 일간지 : ○○○○신문 공고('00.00.00)
- 홈페이지 : ○○공사·○○○○부·국토교통부·기획재정부·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('00.00.00~00.00)
 - ※ 접수기간 : '00.00.00~00.00까지(0일간)

3. 응시자 현황 :

응시 번호	성 명 (생년월일)	학 력	주요 경력	비고
1	○○○ (00.00.00, 男)	·○○고(00) ·○○대 ○○학(00) ·○○대 ○○학석사(00)	※최근 경력부터 4~5개 기재	
2	○○○ (00.00.00, 女)	·○○여고(00) ·○○대 ○○학(00) ·○○대 ○○학 석사(00)	※최근 경력부터 3~4개 기재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
4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(총 0명)

유형	성 명 (성별)	소속 및 직위	주요 경력	비고
비상임이사 (0명)	○○○			-
	○○○			-
	○○○ (女)			-
	○○○			-
	○○○			-
이사회추천 (0명)	○○○			농업계
	○○○ (女)			여성계
	○○○			학계
	○○○			구성원 대변자